

定 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정 관

제정 2012년 9월 1일 정관 제 1 호

개정 2015년 3월 27일 정관 제 2 호

개정 2019년 3월 28일 정관 제 3 호

개정 2020년 3월 27일 정관 제 4 호

개정 2021년 3월 30일 정관 제 5 호

개정 2024년 3월 28일 정관 제 6 호

제 1 장 총 칙

제1 조(상호)

본 회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KOOK TIRE & TECHNOLOGY CO., LTD.라 표기한다. 단, 본 상호 변경의 효력은 2019 년 5 월 8 일부터 발생한다. (정관 제 3 호)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 가공 및 판매업
2. 고무제품 및 특수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각종 타이어 및 기타고무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용역업
4.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5.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6. 자동차 정비 점검 및 수리업
7. 기계, 산업설비류 및 기타부품류 제조, 조립, 장비 임대 및 판매업
8. 주택사업, 주거용 건물 분양 공급 및 임대업
9.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10. 운수, 운수관련 서비스업 및 보관, 창고업
11. 수출입 및 도소매업
12. 신소재 및 비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13. 운수장비 및 기타부품의 제조, 조립 및 판매업
14.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15. 주유소 사업
16. 교육서비스업
17. 인터넷 및 정보통신업
18.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종합레저사업
1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 20.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업
- 21. 연료전지용 분리판 및 부품류 개발, 제조, 판매, 연구용역업
- 22. 고무제품 렌탈임대업 (정관 제 3 호)
- 23.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이에 부대되는 서비스업 (정관 제 3 호)
- 24. 자동차 경주장 및 주행 체험장 운영 등 스포츠서비스업 (정관 제 4 호)
- 25.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단, 본 본점의 소재지 변경의 효력은 2020 년 4 월 20 일부터 발생한다. (정관 제 4 호)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현지법인, 작업소 및 공장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kooktir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 억 5 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 백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 2 호)

-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의 하나로서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정관 제 2 호)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주식 또는 정관이 정하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할 수도 있다. (정관 제 2 호)

제 9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정관 3 호)

제 10 조(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생산, 판매 등의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제 5 호, 제 6 호 및 제 7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정관 제 5 호)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정관 제 3 호)
- ③ 제2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정관 제 5 호)

제 14 조 (삭제) (정관 제 3 호)

제 15 조(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 5 호)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 제 3 호)

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정관 제 5 호)

제 18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제 5 호)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0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제 23 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및 "서울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2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에서 개최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6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 30 조(삭제) (정관 제 6 호)

제 31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2 조(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5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 3 호)

제 33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5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6 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7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정관 제 6 호)
- ②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정관 제 6 호)

제 38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 5 호)

제 39 조(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1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정관 제 3 호)
 - 4. 내부거래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정관 제 5 호)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0 조, 제 41 조 및 제 4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5 조(상담역 및 고문)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상담역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 5 호)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관 제 5 호)
-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 3 호)

제 47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소집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정관 제 3 호)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9 조(회계년도)

본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 3 호)

제 52 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2 조의 2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보통주식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배정할 수 있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우선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정관 제 2 호)

제 53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배당하는 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정관 제 2 호)
-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 6 호)

제 54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가 설립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세칙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3. (적용범위) 본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사록에 의하고, 의사록에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4.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2 년 7 월 27 일자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5.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본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 4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6. (발기인)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7.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8. 본 정관은 2019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 조는 2019 년 5 월 8 일부터, 제 9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6 조의 2 및 제 18 조의 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3 호)
9. 본 정관은 2021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5 호)